



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군 산 시 장

발행처 : 공보담당관 (☎450-4221)

【규 칙】

- 군산시 규칙 제421호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훈 령】

- 군산시 훈령 제237호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 7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08-1620호 2009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액 결정고시 11
- 군산시 고시 제2008-16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임피면 술산리 383-14번지 일원) 12
- 군산시 고시 제2009-1호 군산 간치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 14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08-1910호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공고 18
- 군산시 공고 제2008-19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미룡동 63-3번지 일원) 19
- 군산시 공고 제2009-14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
- 군산시 공고 제2009-15호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의 주민수 공표 21
- 군산시 공고 제2009-1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22
- 군산시 공고 제2009-17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24
- 군산시 공고 제2009-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열람공고(소로2-257) 25
- 군산시 공고 제2009-37호 군산시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공영사업과, 건축과) 27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09-13호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 군산시 공고 제2009-25호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1

회
람

군 산 시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421호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문화재 연구원
- 10. 청소년수련담당 및 청소년수련지도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연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직무구분 및 직 위	상당 계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문화재 연구원	6급상당	문화재 보존·유지관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등 소관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정7급 문화재관리 전문요원으로 당해 직급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2.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문화재관리 분야 (박물관, 문화재 연구소 등)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사학(역사, 역사교육)고고학고건축보존학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7급상당	문화재 보존·유지관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등 소관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문화재 관리분야 (박물관, 문화재 연구소 등)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사학(역사, 역사교육)고고학고건축보존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별표 10]

청소년수련담당 및 청소년수련지도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직무구분 및 직 위	상당계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청 소 년 수련담당	6급상당	·청소년 수련 업무 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7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7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청소년 상담사 2급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청 소 년 수 련 지 도 사	7급상당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5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청소년 상담사 3급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8급상당	·청 소 년 고민 상 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고등학교 교사로 2년이상 근무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삭제 2008. 04. 30></p> <p>2. ~ 9.(생략)</p> <p>10. <u>청소년수련지도사</u></p> <p>11.~ 21.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p> <p>-----</p> <p>-----</p> <p>-----</p> <p>1. <u>문화재연구원</u></p> <p>2. ~ 9.(현행과 같음)</p> <p>10. <u>청소년 수련담당 및 청소년수련지도사</u></p> <p>11.~ 21.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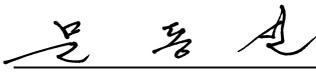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u>문화재 연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u> <u>(제3조 관련)</u>			
직무분 및직위	상당 계급	직무 내용	임 용 자 격	직무분 및직위	상당 계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 설></u>	<u>문화재 연구원</u>	<u>6급 상당</u>	<u>문 화 재 보존·유지 관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등 소관 업무</u>	<u>1. 별정7급 문화재관리 전문요</u> <u>원으로 당해 직급 근무경력이 7</u> <u>년 이상인자</u> <u>2.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를</u> <u>졸업하고, 석사이상 학위 소지</u> <u>자로 문화재관리 분야(박물관 문</u> <u>화재 연구소 등) 근무경력이 7년</u> <u>이상인자</u> <u>- 사학(역사, 역사교육)고고</u> <u>학교건축보존학 등</u> <u>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u> <u>문화재관리분야 근무경력이 7</u> <u>년 이상인자</u>
<u><신설></u>	<u><신설></u>	<u><신 설></u>	<u><신 설></u>	<u>문화재 연구원</u>	<u>7급 상당</u>	<u>문 화 재 보존·유지 관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등 소관 업무</u>	<u>1. 4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u> <u>를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소지</u> <u>자로 문화재 관리분야 (박물관</u> <u>문화재 연구소 등) 근무경력이</u> <u>5년 이상인자</u> <u>- 사학(역사, 역사교육)고고</u> <u>학교건축보존학 등</u> <u>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u> <u>서 문화재관리 분야 근무경력</u> <u>이 5년 이상인자</u>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 <u>청소년수련지도사 지방별정직공무원</u> <u>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u>				[별표 10] <u>청소년수련담당 및 청소년수련지도사 지방별정직공무원</u> <u>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u>			
직무분 및직위	상당 계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무분 및직위	상당 계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청소년 수련 지도사	7급 상당	·청소년건전 생활지도 ·청 소 년 고민상담	1. 일반직 8급 또는 별정 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5년이 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u>청소 년 상담원</u> 3급이상 또는 <u>청 소년지도사</u>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u>청소년 수련 담당</u>	<u>6급 상당</u>	· <u>청소년 수련업무 전반</u>	1.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 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7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7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 행정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자 중 <u>청소년 상담사</u> 2 급이상 또는 <u>청소년지도사</u> 1급이 상 자격증 소지자
	8급 상당		1. 중·고등학교 교사로 2년이 상 근무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u>청소 년지도사</u>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 한자	청소년 수련 지도사	7급 상당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청소년 고민 상담	1.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 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5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 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자 중 <u>청소년 상담사</u> 3 급이상 또는 <u>청소년지도사</u>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8급 상당		1. 중·고등학교 교사로 2년이상 근무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 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중 <u>청소년지도사</u> 3급이 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237호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 1 ~ 12. 31까지”을 “등급에 따라 단기 1년부터 장기 3년까지로”로 한다.

제10조제5항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족수당

제10조의2 중 “급식비 및 교통비”를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훈련시에 간식비, 목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속선수가 우승한 경우에 한하며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를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로 하며, 단서 조항 중 “우승한”을 “입상한”으로, “우승자”를 “입상자”로 한다.

별표 4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초임호봉 산정기준 (제10조4항 제1호와 관련)

구 분	코 치	트레이너	A 급	B 급	C 급
봉 급 기준	일반직 6급8호봉 기준	일반직 7급12호봉 기준	일반직 7급10호봉 기준	일반직 7급7호봉 기준	일반직 8급7호봉 기준

[별표 5호]

장려금 지급 기준 (제14조 관련)

구 분 (마 라 톤)	1 위 (1위 ~ 3위)	2 위 (4위 ~ 6위)	3 위 (7위 ~ 10위)	비 고
전국 규모 대회	1,000,000	500,000	300,000	
전국 체육 대회	2,000,000	1,000,000	500,000	
아시아 경기 대회	4,000,000	2,000,000	1,000,000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경기 포함)	10,000,000	4,000,000	2,000,000	

※ 전국 규모 대회에서 참가팀이 10팀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100분의 50 지급한다.

※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국이 10국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100분의 50 지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규정은 <u>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u>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u>군산시청에</u>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 (입단계약 체결) ① ~ ② (생략) ③ 입단 계약기간은 <u>1.1~12.31까지 1년간으로</u>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별표 3에 의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제10조 (보수)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 6 (생략) 7. <신 설></p> <p>제10조의 2 (복리후생비 등) 단원에게는 지방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명절휴가비, <u>급식 및 교통비, 숙소운영비</u>를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봉급기준일로 하고,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로 한다.</p> <p>제13조 (훈련 및 대회 참가) ① ~ ③(생략) ④ <신 설></p> <p>제14조 (장려금 지급) ① (생략) ②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은 <u>소속 선수가 우승한 경우에 한하며 최고수혜자와 동일하게</u> 지급한다. 단, 지도자는 선수가 2개 종목이상 <u>우승한</u> 경우에는 1개 종목에 대한 <u>우승자</u> 장려금만 지급한다.</p>	<p>제1조(목적) 이규정은 「<u>국민체육진흥법</u>」 제10조 ----- ----- -----.</p> <p>제5조 (입단계약 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단 계약기간은 등급에 따라 <u>단기 1년부터 장기 3년까지로</u> ----- -----.</p> <p>제10조 (보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가족수당</u></p> <p>제10조의 2 (복리후생비 등) ----- ----- -- <u>급식비, 교통비, 직급 보조비</u> ----- -----.</p> <p>제13조 (훈련 및 대회 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훈련시에 간식비, 목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u></p> <p>제14조 (장려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은 <u>최고수혜자와 동일하게</u> ----- -----<u>입상한</u> ----- <u>입상자</u> ----- -----.</p>

[별표 4]

초임호봉 산정기준 (제10조4항 제1호와 관련)

비교	구분	코 치	트레이너	A 급	B 급	C 급
현 행	봉급기준	일반직 6급8호봉 기준	일반직 7급10호봉 기준	일반직 7급8호봉 기준	일반직 7급6호봉 기준	일반직 8급7호봉 기준
개정안	봉급기준	일반직 6급8호봉 기준	일반직 7급12호봉 기준	일반직 7급10호봉 기준	일반직 7급7호봉 기준	일반직 8급7호봉 기준

[별표 5호]

장려금 지급 기준 (제14조 관련)

구 분 (마 라 톤)	1 위 (1위 ~ 3위)		2 위 (4위 ~ 6위)		3 위 (7위 ~ 10위)		비 고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전국 규모 대회	500,000	1,000,000	300,000	500,000	200,000	300,000	
전국 체육 대회	800,000	2,000,000	600,000	1,000,000	400,000	500,000	
아시아 경기 대회	1,500,000	4,000,000	1,200,000	2,000,000	900,000	1,000,000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경기 포함)	3,000,000	10,000,000	2,5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 전국 규모 대회에서 참가팀이 10팀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100분의 50 지급한다.

※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국이 10국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100분의 50 지급한다.

군산시고시 제2008-1620호

2009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 및 군산시 시세 조례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상반기 적용 도축세 시가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8. 12. 31.

군 산 시 장

— 다 음 —

1. 시행일자 : 2009. 1. 1

2. 결정내용

구 분	단 위	시가의 가액(원)	세 율	세 액(원)
소	한 우 마리당 (500kg)	2,700,000	시가의 10/1,000	27,000
	육 우 "	1,400,000	"	14,000
	유 우 "	700,000	"	7,000
돼 지	마리당 (100kg)	150,000	"	1,500

끝.

군산시 고시 제2008-1621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임피면 술산리 38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소로 2-3
 - ▷ 명 칭 : 임피 술산취락지구 철도변 도로정비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소로 2-3	8	244	8	186.47	1,501	
소 계						1,501	

4.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 ▷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8. 12. ~ 201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376-1	전	5	5		군산시			
2	377-1	대	68	68	최응창	임피면 술산리 377			
3	381-1	대	14	14	심순희	임피면 술산리 380-1			
4	382-2	대	218	218	심순희	임피면 술산리 380-1			
5	383-14	임	547	547		군산시			
6	383-16	임	58	58	심순희	임피면 술산리 380-1			
7	384-2	도	10	6	김강수				사정, 미등기
8	384-3	종	74	64		임피면 술산리 384-1 한국기독교장로회술산교회			
9	447-2	도	17	6		군산시 옥구군			
10	447-3	전	126	126		군산시			
11	444-7	전	20	20	문병현	임피면 술산리 444-1			
12	448-6	도	7	4	고정택	임피면 술산리 422			
13	448-8	답	18	2		군산시			
14	448-9	답	343	343		군산시			
15	647	도	9,849	20		국(건설교통부)			
	합계	15필	11,374	1,501					

군산시 고시 제 2009-1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의거 군산 간치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군 산 시 장

1. 권역현황

- 사 업 명 : 군산 간치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창오리 일원
- 면 적 : 245ha(농경지:56.7ha, 임야:187.7ha, 기타:0.6ha)
- 인 구 : 135호(농가:82호, 비농가:53호), 인구 331명
- 지역자원

권역 내 : 진성창지, 창안방죽, 다랭이논, 정보화센터 및 각종 체험시설,
주박장아찌 가공시설, 큰참외 재배지 등

권역 외 : 새만금간척지, 금강 철새도래지, 망경산 등

2. 추진경위

- 대상지 권역 확정 : 2008. 3. 3
- 기본계획수립 : 2008. 4. 25 ~ 10. 22
- 기본계획승인 : 2008. 12. 19
- 시행계획수립 : 2009. 1. ~ 4.
- 사 업 기 간 : 2009. ~ 2013 (5년)

3. 주요사업 및 투자계획

○ 투자비 : 총 4,280백만원 (보조 4,100, 자부담 180)

(금액 : 백만원)

사 업 구 분	주 요 시 설	투 자 계 획
문화복지시설	권역 정주환경정비, 간치말 마을회관	862
소득기반시설	주박장아찌 가공공장, 간치말 반찬 가공공장	584<146>
농촌관광시설	창안제수변학습장, 간치말체험농장, 간치말체험마당	911
경관정비시설	아름다운 마을길 조성	428<34>
지역역량강화(S/W)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정보화구축, 권역컨설팅, 마을경영지원	458
관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439
기 타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45
예비비	예비비	373

○ 부문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위	합계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4년차	5년차
합계			<180> 4,100	<146> 2,473	430	813	<146> 1,230	<34> 1,627	<34> 824	803
문화복지시설	소계	-	862	862		640	222			
	권역 정주환경 정비	1	222	222			222			
	간치벌 마을회관	1	640	640		640				
소득기반시설	소계	-	<146> 584	<146> 584			<146> 584			
	주박장아찌 가공공장 조성	1	<82> 326	<82> 326			<82> 326			
	간치벌 반찬 가공공장 조성	1	<64> 258	<64> 258			<64> 258			
소계	-	911	169	169			742	176	566	
농촌관광기반시설	창안제 수변학습장 조성	1	380					380		380
	간치벌 체험농장 조성	1	176					176	176	
	간치벌 체험마당 정비	1	169	169	169					
	권역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1	186					186		186
소계	-	<34> 428					<34> 428	<34> 428		
경관시설	아름다운 마을길 조성	1	<34> 428					<34> 428	<34> 428	
	소계	-	458	284	53	58	173	174	95	79
지역역량강화(S/W)사업	주민교육	1	148	111	27	23	61	37	16	21
	홍보마케팅	1	63	4			4	59	36	23
	브랜드개발	1	34	34			34			
	정보화구축	1	47	39			39	8	8	
	권역 컨설팅	1	34	20	6	7	7	14	7	7
	마을경영지원	1	132	76	20	28	28	56	28	28
	소계	-	439	282	92	51	139	157	79	78
관리비	세부설계비(3.50%)	1	103	72	72			31	31	
	공사감리비(7.86%)	1	233	137		31	106	96	33	63
	사업관리(1.49%)	1	51	37	10	10	17	14	7	7
	잡지출(1.58%)	1	52	36	10	10	16	16	8	8
소계	-	45	45	45						
기타	사전환경성 검토비	1	30	30	30					
	문화재 지표조사	1	15	15	15					
소계	-	373	247	71	64	112	126	46	80	
예비비	예비비(10%)	1	373	247	71	64	112	126	46	80

※ 외서< >: 자부담

○ 전략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위	합계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4년차	5년차
합계			<180> 4,100	<146> 2,473	430	813	<146> 1,230	<34> 1,627	<34> 824	803
문화복지시설	소계	-	862	862		640	222			
	권역 정주환경 정비	1	222	222			222			
	간치벌 마을회관	1	640	640		640				
소득기반시설	소계	-	<146> 584	<146> 584			<146> 584			
	주박장아찌 가공공장 조성	1	<82> 326	<82> 326			<82> 326			
	간치벌 반찬 가공공장 조성	1	<64> 258	<64> 258			<64> 258			
소계	-	911	169	169			742	176	566	
농촌관광기반시설	창안제 수변학습장 조성	1	380					380		380
	간치벌 체험농장 조성	1	176					176	176	
	간치벌 체험마당 정비	1	169	169	169					
	권역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1	186					186		186
소계	-	<34> 428					<34> 428	<34> 428		
경관시설	아름다운 마을길 조성	1	<34> 428				<34> 428	<34> 428		
지역역량강화(S/W)사업	소계	-	458	284	53	58	173	174	95	79
	주민교육	1	148	111	27	23	61	37	16	21
	홍보마케팅	1	63	4			4	59	36	23
	브랜드개발	1	34	34			34			
	정보화구축	1	47	39			39	8	8	
	권역 컨설팅	1	34	20	6	7	7	14	7	7
	마을경영지원	1	132	76	20	28	28	56	28	28
관리비	소계	-	439	282	92	51	139	157	79	78
	세부설계비(3.50%)	1	103	72	72			31	31	
	공사감리비(7.86%)	1	233	137		31	106	96	33	63
	사업관리(1.49%)	1	51	37	10	10	17	14	7	7
잡지출(1.58%)	1	52	36	10	10	16	16	8	8	
기타	소계	-	45	45	45					
	사전환경성 검토비	1	30	30	30					
	문화재 지표조사	1	15	15	15					
소계	-	373	247	71	64	112	126	46	80	
예비비	예비비(10%)	1	373	247	71	64	112	126	46	80

※ 외서< >: 자부담

군산시 공고 제2008-1910호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공고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2003.3.31)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향토문화유산 지정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2월 30일

군 산 시 장

1. 지정내용

-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3건

2. 지정내역

연 번	명 칭	주 소	소유자	지 정 내 역
제16호	구) 불이농촌	산북동 구 불이농촌 일대	군산시	1923년 조성된 불이농촌 간척지 일대를 지구단위로 지정
제17호	조선미곡신탁주식회사 사택	금동 82	윤여삼	1935년 조선미곡신탁주식회사 군산지점장 사택
제18호	이극견 가계 석물군	임피면 축산리 155-1	광주이씨 대중회	광주이씨 이극견 이반 이영부의 묘에 사용된 석물 12기

끝.

군산시 공고 제2008-1918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8. 12. .

군 산 시 장

1. 위 치 : 군산시 미룡동 6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 2) 명 칭 : 미룡동 파밀리아아파트 주변 도로·완충녹지 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도시계획시설개요			실시계획			비고
시설명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중로 2-59	15	491	15	22	392	
중로 2-69	15	35	15	35	564	
중로 3-23	12	354	12	354	4,270	
중로 3-24	12	157	12	157	1,914	
소로2-683	8	28	4	28	145	
소로 2-789	8	371	8	371	2,965	
완충녹지 3	20	416	20	416	8,383	
소계					18,633	

4. 사업시행자
 -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7번지 유신빌딩 4층
 - 2) 성 명 : (주) 누가개발 대표이사 김호성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05. 12. ~ 2008.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09-14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의3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 년 1 월 일

군 산 시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라벨용명단 매당 작성비용 (A4, 14칸)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플로피 디스켓	CD	
60원	250원	(450원×디스켓 개수 + (23원×면수)	(600원×CD 개수 + (23원×면수)	

끝.

군산시 공고 제2009-15호

조례제장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의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 .

군 산 시 장

19세이상 주민수 및 연서주민수

(단위 : 명)

자 치 단체명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B)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A-B)	연 서 주민수
군산시	203,314	1,055	202,259	4,045 (주민총수의1/50)

끝.

군산시 공고 제2009-1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 월 일
군 산 시 장

19세이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서명인수

【자치단체장】

(단위 : 명)

읍면동	19세이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 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군산시	202,336	30,350		
옥구읍	3,507		527	
옥산면	2,642		397	
회현면	3,238		486	
임피면	3,009		452	
서수면	2,929		440	
대야면	5,775		867	
개정면	3,374		507	
성산면	3,000		450	
나포면	2,472		371	
옥도면	3,676		552	
옥서면	4,650		698	
해신동	3,797		570	
월명동	7,870		1,181	
삼학동	7,163		1,075	
신룡동	7,693		1,154	
중앙동	4,235		636	
홍남동	8,943		1,342	
조촌동	11,523		1,729	
경암동	7,726		1,159	
구암동	5,092		764	
개정동	3,036		456	
수송동	17,093		2,024	
나운1동	12,741		1,912	
나운2동	19,312		2,024	
나운3동	24,859		2,024	
소룡동	13,204		1,981	
미성동	9,777		1,467	

【시의회의원】

(단위 : 명)

선거구별	선거구역	19세이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최소서명인수	비고
가 선거구	소계	11,713	2,343		
	임피면	3,009		118	
	서수면	2,929		118	
	대야면	5,775		118	
나 선거구	소계	11,882	2,377		
	개정면	3,374		119	
	성산면	3,000		119	
	나포면	2,472		119	
	개정동	3,036		119	
다 선거구	소계	28,576	5,716		
	중앙동	4,235		286	
	조촌동	11,523		286	
	경암동	7,726		286	
	구암동	5,092		286	
라 선거구	소계	45,348	9,070		
	홍남동 (구 홍미동 지역)	4,401		454	
	홍남동 (구 홍남동 지역)	4,542		454	
	수송동	17,093		454	
	나운2동	19,312		454	
마 선거구	소계	17,713	3,543		
	옥구읍	3,507		178	
	옥산면	2,642		178	
	회현면	3,238		178	
	옥도면	3,676		178	
	옥서면	4,650		178	
바 선거구	소계	15,033	3,007		
	월명동 (구 월명동 지역)	4,235		151	
	월명동 (구 선양동 지역)	3,635		151	
	삼합동 (구 오룡동 지역)	2,794		151	
	삼합동 (구 삼합동 지역)	4,369		151	
사 선거구	소계	20,434	4,087		
	신평동	7,693		205	
	나운1동	12,741		205	
아 선거구	소계	51,637	10,328		
	해신동	3,797		517	
	나운3동	24,859		517	
	소룡동	13,204		517	
	미성동	9,777		517	

군산시 공고 제2009-17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군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

군 산 시 장

(단위 : 명)

내 국 인			20세이상 영주체류자격 외국인 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내국안 외국인)	투표청구 서명인 수
20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B)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A-B)			
200,111	1,039	199,072	79	199,151	18,105 (청구권자 총수의 1/11)

끝.

군산시 공고 제2009-18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1.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조촌동 551-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2) 명 칭 : 시청~운동장간(조촌8통) 연계도로 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소로 2-257	8	188	7	112.2	856	
소 계						856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1. ~ 2011. 1.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조촌동	515-15	전	55	55	홍계선	조촌동 950-1			
2	조촌동	514-1	전	63	63	임순옥	조촌동 513-1			
3	조촌동	515-9	대	37	37	유미순	조촌동 515-3			
4	조촌동	514-4	대	18	18	이길례	경암동 539-9 새한A.P.T101동1105호			
5	조촌동	509-21	전	22	22	군산시		김광섭 임순옥	조촌동 495-2 조촌동513-1	6/155 99/155
6	조촌동	513-7	대	49	49	임순옥	조촌동 513-1			
7	조촌동	510-1	묘	88	88	박시동	중앙로 3가 140			
8	조촌동	495-5	대	41	41	김광섭	조촌동 520			
9	조촌동	511-3	대	53	53	군산시		홍권표	경암동 218	1/2
10	조촌동	495-4	대	123	123	군산시				
11	조촌동	495-1	도	96	7	군산시				
12	조촌동	711	도	962	8	군산시				
13	조촌동	551-2	도	33	2	군산시				
14	조촌동	551-8	도	151	151	군산시				
15	조촌동	551-5	도	118	118	군산시				
16	조촌동	553-4	도	17	17	군산시				
17	조촌동	482-17	답	444	4	군산시				
	합계			2,370	856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조촌동	495-5	건물	스레트	3.15㎡	미등기				
2	조촌동	495-5	건물	스레트	13.95㎡	미등기				
3	조촌동	511-3	건물	스레트	4.00㎡	미등기				
4	조촌동	510-1	건물	스레트	46.20㎡	미등기				
5	조촌동	513-7	건물	스레트	44.55㎡	미등기				
6	조촌동	509-21	건물	조립식	71.65㎡	미등기				
7	조촌동	514-1	건물	스레트	8.50㎡	미등기				
8	조촌동	514-4	건물	스레트	70.95㎡	미등기				
9	조촌동	495-2	건물	스레트	74.80㎡	미등기				
10	조촌동	510-1	나무	밤나무	1주					
11	조촌동	510-1	나무	감나무	1주					
12	조촌동	510-1	나무	깨죽나무	1주					
13	조촌동	482-17	전력주		1주					
14	조촌동	553-1	전력주		1주					
15	조촌동	551-5	전력주		1주					
16	조촌동	551-5	전력주		1주					

군산시 공고 제2009-37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6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군 산 시 장

1.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8.12.30)
2. 공인등록 연월일 : 2009. 1. 7.
3. 폐기공인 연월일 : 2009. 1. 7.
4.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08. 1.
5. 등록공인 및 인영(2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공영사업과	군산시건설교통국공영사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건축과	군산시건설교통국건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6. 폐기공인 및 인영(1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건축과	군산시건설교통국주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군산시 공고 제2009-13호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 및 시책사업 추진과 시정홍보를 통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통·이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조항 수정(안 제1조)

▶ 제1조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 제81조

나. 통이장의 사기진작책 추가 신설 관련(안 제15조)

▶ 통이장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 도모을 위한 체육단합 행사 지원

▶ 통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44조”를 “제81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통·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의 기회, 체육·단합 행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 81조----- ----- -----
제15조(사기진작)②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통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 할 수 있다.	제15조(사기진작)②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통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의 기회, <u>체육단합 행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u> 의 범위안에서 제공 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고 제2009-25호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08. 8. 14 공포) 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
- 나. 소비환경이 다변화 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상담실 설치

- 목 적 : 소비자단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 업무 처리
- 내 용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 자료제공

나. 소비자 피해구제

- 처 리 :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 품목별 관련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지정 신속 공정하게 처리
- 기 간 : 상담 기간은 1주일 이내
- 역할 : 과학기술 분야 각종 시책 심의

다 심의안건 처리

- 제출 :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제출
- 의 퇴 :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인에 사전심의 의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063-450-4351 팩스063-450-63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정진수 (063-450-4351), 담당자 이영수(전화 063-450-6230, E-mail LEECY319@gunsan.go.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담 및 고발 접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관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처리기한) ①피해구제 신청시 상담은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피해 구제인 경우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속히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피해구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 여부에 필요한 경우로 시험 검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①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 제 회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안건명 :)

제 안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안 건 명 :

심의요지 :

근 거 :

- 1.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 2. 심의안건 관계법령 등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검토 및 처리의견

첨 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

제안자 직위
성명

과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위원 (명)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o 안건 1

o 안건 2

o 안건 3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간사 ○○○ (서명)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결 재			위원회개최			심의안건		
간사	서기	담당자	일시	장소	참석자	건 명	제안자	주요내용